

장애인 활동지원사업

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
□ 사업근거

-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- 「2011 장애인복지 종합시책」(행정1부시장방침, 2011.5.20)
- 「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」(시장방침, 2011.11.3)
-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2조

□ 추진경위

- '06.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
- '07.05월 장애인활동보조 국가사업 전국 시행
- '07.0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
- '11.07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확대 시행
- '11.10월 장애인활동보조 →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·확대
- '13.01월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(장애1급 → 장애1~2급)
- '13.07월 장애아동 지원시간 확대(80→100시간) 및 1급탈락자 신규지원(40시간)
- '14.03월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(180→200시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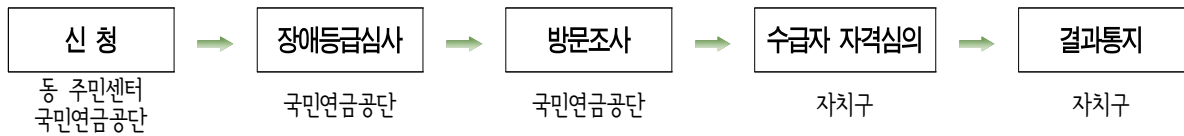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장애1·2급 중증장애인(소득기준 없음, 만 6세~65세미만)

- ▶ 국고보조사업 : 1~2급 장애인으로서 '인정조사표'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
- ▶ 시비추가사업 :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국고지원 탈락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220점 미만인 자, 시설퇴소자

- 대상인원 : 월 14,289여명(국비 12,370명, 시비추가사업 1,919명)
 - 국고지원사업 : '11년 : 7,538명 → '12년 : 11,920명 → '13년 : 10,435명 → '14년 : 11,600명 → '15년 : 12,370명
 - 시비지원사업 : '11년 : 1,557명 → '12년 : 1,917명 → '13년 : 2,295명 → '14년 : 1,854명 → '15년 : 1,919명

○ 대상자 선정절차



※ 방문조사 :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보 등을 조사

- 지원급여 : 등급에 따라 월 48시간~592시간(국고48~392, 시비40~200)
 - 기본급여 :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
 - 추가급여 :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
 - 서울시 추가급여 :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외상 또는 사자미비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~220점 미만인 자, 시설퇴소 장애인

기본급여(국고보조)			추가급여(국고보조)		서울시 추가급여	
구분	지원등급	월 급여액(시간)	지원분류	월 급여액(시간)	지원분류	월 급여액(시간)
성인 · 아동 (장애1~2급)	1등급 (380점~470점)	1,040천원 (118시간)	① 최중증(400점 이상) 독거가구	2,414 (274시간)	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	1,762천원 (200시간)
	2등급 (320점~379점)	828천원 (94시간)	② 중증(380~399점) 독거가구	705 (80시간)		
	3등급 (260점~319점)	625천원 (71시간)	③ 기타(380점 미만)독거가구	176 (20시간)	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	1,057천원(120시간)
	4등급 (220점~259점)	423천원 (48시간)	④ 최중증(400점 이상) 취약가구	2,414 (274시간)		
			⑤ 중증(380~399점) 취약가구	705 (80시간)	장애1급 중 국비1등급	881천원(100시간)
			⑥ 기타(380점 이하) 취약가구	176 (20시간)	장애1급 (인정점수 200점~220점)	352천원(40시간)
			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(6개월)	705 (80시간)		
			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(6개월)	176 (20시간)	시설 퇴소자	264천원(30시간)
			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	88 (10시간)		
			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	352 (40시간)		
			⑪ 가족(실질적 보호자) 등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	176 (20시간)		
			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 생활·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	634 (72시간)		

※ 취약가구 :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~2급 장애인,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

○ 서비스내용

- 활동보조 :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이동보조 등
- 방문목욕 :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
- 방문간호 : 간호, 요양에 관한 상담, 구강위생서비스 등

○ 서비스 단가 : 급여이용 종류에 따라 별도 부과

- 활동보조 : 시간당 8,810원(야간, 공휴일 13,215원)
※ '14년 단가 8,550
- 방문목욕 : 1회 목욕시 65,410원 ~ 72,540원
- 방문간호 : 1회 방문당 31,760~47,940원

○ 본인부담금

- 국고지원 : 등급 및 소득수준별 차등부과(기초수급자 무료, 차상위자 정액)
· 기본급여액의 6~15%(25천원~95천원)+ 추가급여액의 2~5%(2천원~117천원)
- 시비추가지원 : 없음

○ 지원방법 :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(바우처제공)

-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: 108개소(장애인단체 10, 장애인복지관 29, IL센터 39, 지역자활센터 15, 노인장기요양기관 2, 사회복지관 4, 기타 9)
- 방문목욕 : 20개소, 방문간호 : 19개소
-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: 8개소

○ '15년 사업비 : 148,965백만원

- 국고보조사업 : 125,685백만원
* 국비 73,500백만원(50%), 시비 52,185백만원(34.5%)
- 시비추가사업 : 23,280백만원(시비 100%)

'13년 추진실적

- '13년 누적 이용인원은 140,579명
 - 국고보조 : 117,952명, 시비추가 : 22,627명
 - 월 평균 이용인원 : 11,715명

'14년 추진실적

- '14년 누적 이용인원은 156,276명('14.12월말 현재)
 - 국고보조 : 133,128명, 시비추가 : 23,148명
 - 월 평균 이용인원 : 13,023명